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유죄 확정 시 출산크레딧 적용 배제〉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76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아동학대관련범죄 유죄 확정 시 출산크레딧 적용 배제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 기관 의견	9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7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7. 6.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출산크레딧은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노고와 경제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방임, 심지어 치사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자라 할지라도 단지 출산·입양을 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아동학대관련범죄 유죄 확정 시 출산크레딧 적용 배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¹⁾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생략) <u><신설></u>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피해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자녀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은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	③ -----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현행	개정안
모가 모두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u>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제2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 ----- -----. -----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주는 제도로, 첫째·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각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당 18개월씩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출산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출산·입양 및 양육에 따른 가입이력 상실을 정책적으로 보전하여줌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는데,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전제인 ‘양육’의 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까지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첫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19조제2항이 신설될 경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³⁾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공단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대강을 규정한 현행법 제123조제2항에는 ‘범죄경력자료’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단이 이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바,⁴⁾

범죄경력자료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⁵⁾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범죄경력자료’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될

3)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②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2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피해자인 자녀 외의 나머지 자녀에 대하여는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피해자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이 신설되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자녀’에 대하여는 출산크레딧을 계속 적용받게 됨.

다만, 가정(家庭)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관련 범죄는 2 이상의 자녀 중 일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에 대하여는 아동학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부 또는 모에 대하여 출산크레딧 혜택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바,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자녀’를 기준으로 한 출산크레딧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미 지급된

노령연금 급여 중 피해자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이 적용된 데 따른 급여분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⁶⁾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은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그에 따른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 제19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이 적용된 노령연금 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출산크레딧의 적용을 배제하여 감액·조정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같은 시기에 범한 경우라도 수사·기소 등의 형사·사법절차 속행 여부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게 되면, 피해자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이 적용된 노령연금 급여의 지급 기간도 서로 달라질 수 있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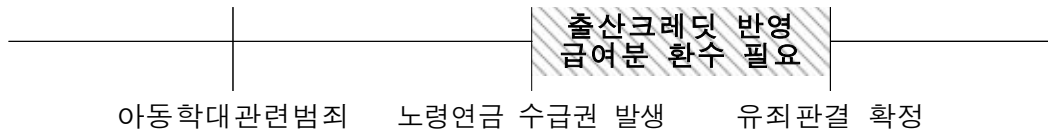
공단이 급여를 환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된 현행법 제57조제1항을

6)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각 호 생략)

함께 개정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된 ‘출산크레딧 반영 급여분’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⁷⁾

< 출산크레딧 반영 급여분 환수 방안(안) >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게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으며, 공범자에 대한 제재도 명확히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

7)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